

第11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1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 審査報告書	14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7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1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7面
8.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33面
9.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37面
10. 都市計劃(案) 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39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9일 · 이동규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이 동 규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종로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2조)
-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제정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 도모와 함께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 아울러서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조직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구청장은 종로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2조)
-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4조)

다. 검토의견

-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 조깅 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체육인구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관할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진흥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전체 국민의 40%가 생활체육을 생활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권장하고 육성·지원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 자체 실천계획의 하나인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 제정으로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으나, 다만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체육관련 예산 지원금을 보다 확실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 심의 및 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체육관련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라.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중요 내용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 승 태 위원,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이 동 규 의원,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화진흥과장 임 병 의)

문) 안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렇지만, 동조제2항의 지급대상 사업도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갈수록 체육인이 점증되고 있고, 또한 그 수준도 매우 향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작년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중구도 금년 2월 초에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 공포된 서울시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좀더 세밀한 부분은 시행규칙과 운영지침 등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문) 종로구생활체육협회에 가입한 단체 수와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현재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 종로구생활체육협회에 가입된 단체는 예산지원을 받는 등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역에는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활동하는 소외된 체육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동의 이러한 소외된 체육단체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답)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2월 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2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동일하게 개정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자치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년연장 : 현행 53세 → 57세로 연장(단, 시행시기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 개정근거

- 구청장방침 총무 12110-411호(2001. 11. 24)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내무부 지공12101-189, '96. 4. 15)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직종간 위화감 해소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동결에 따른 부족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충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속업무 등의 행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지방고용직공무원(1종지도원) 정년연장 : 53세 → 57세
- 개정조례안 시행시기 :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 추진 경위

- 1953년 11월 : 리·동으로 야경제 실시(주민자율)
- 1989년 1월 : 노태우대통령 선거공약실천으로 현직 방법대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결정
- 1989년 3월 :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준칙) 시달
 - 1종지방고용직방법원, 근무상한 53세, 퇴출시 충원금지, 경찰서(파출소) 파견배치 방법활동 등
- 1989년 3월 1일 : 종로구 방법대원 290명 지방고용직으로 임용
- 1996년 4월 15일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내무부)
 - 방법원 직명변경 :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 지방방법원 경찰서(파출소) 파견근무제 폐지
 -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 : 53세 → 58세
- 1997년 11월 5일 : 방법원 직명변경 및 정년연장 조례개정안 상정결과 부결
 - 직명변경 :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 정년연장 : 정년 53세 → 정년 58세
- 2001년 10월 12일 : 직명변경 조례개정안 상정결과 원안 통과
 -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라. 관련자료 검토

- 연령별 현황

2001.11.30 현재

계	53세	52세	51세	50세	50세미만	비 고
119명	4명	12명	12명	8명	83명	

- 담당업무별 - 부서별 근무현황(별첨)

2001.11.30 현재

계	단속분야 (주차, 청소, 가로, 공원, 광고물 등)	청사관리	행정보조
119명	75명	15명	29명

□ 타구 추진현황 - 각 구 고용직 명칭 및 정년 현황(별첨)

○ 정년 현황(2002.1.20 현재)

계	50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25개구	1개구	4개구	7개구	3개구	5개구	3개구	2개구

- 조례개정 추진 중인 구 : 7개 구(종로구 포함)
 - ┌ 57세로 연장 추진 구 : 3개 구(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 └ 55세로 연장 추진 구 : 4개 구(동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 조례개정 미추진 구 : 6개 구(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 소요예산 판단

(단위:천원)

구 분	1인당(평균)	전체(91명)
월 지급액(제수당포함)	1,583	144,053
년 간	18,996	1,728,636
4년간 지급액	75,984	6,914,544

마. 검토의견

-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정년연장은 문제없음
-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행자부 등 관련 상위기관에서는 본 사안은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면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내 타구의 정년 연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월 20일 기준으로 25개 구 중 현재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인 구는 총 13개 구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12개 구 중 금년에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는 우리 종로구를 포함하여 6개 구, 정년연장을 해주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는 구가 6개 구이며 당초에는 1년을 정년연장 해주었다가 다시 재연장 중인 구가 1개 구임. 정년연장을 해준 구에서도 54세부터 57세까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장해준 정년은 55세로서 9개 구가 연장을 해주었거나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방법원들에게 정년연장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직종간 위화감 해소와 형평성이 유지되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가장으로서 경제적 위치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방지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외에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원 동결에 따른 부족인력을 대체하여 각종 단속업무 등에 투입 종사케 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 IMF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경비 절약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대교체,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 등과 공직사회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방법원의 정년 연장은 이들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선심성 조치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의 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지방지도원 담당업무현황

부 서 별	근무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감사담당관	1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총 무 과	9	발간실 1 / 식당 3 / 청사관리 5	
기획예산과	1	공보팀업무	
민원봉사과	10	호적업무 2 / 민원업무 4 / 현장민원실 3	
문화진흥과	5	문화재관리 4 / 오락실관리업무 1	
자치행정과	1	광고물관리	
여 권 과	5	여권민원업무	
세 무 1 과	4	세무고지서관련업무	
세 무 2 과	3	세무채납업무	
지 적 과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 건축물대장발급 등 3	
사회복지과	2	여성문화센터관리	
지역경제과	1	LPG 가스점검	
환경위생과	1	배출가스단속	
청소행정과	7	청소차고관리 5 / 무단투기단속 2	
주 택 과	1	향측관련업무	
공원녹지과	2	공원관리	
건설관리과	3	점용료 체납업무 2 / 가로정비 1	
보 건 소	2	청사관리	
교통지도과	53	주차단속, 전용차로단속	
사 직 동	1	문화센터관리 및 청사관리	
승 인 1 동	1	차량관리	
계	119		

각 구 지도원 현황

2002.1.20 현재

구 명	명 칭	인 원	정 년	비 고
종 로 구	지도원	115	53세	
중 구	지도원	124	54세→57세	2002년 임시회 중 정년연장
용 산 구	지도원	113	57세	
성 동 구	지도원	66	55세	
광 진 구	지도원	70	56세	
동대문구	지도원	66	52세→55세	조례개정 예정
중 량 구	지도원	51	52세	
성 북 구	지도원	86	53세	
강 북 구	방법원	26	52세→55세	2002년 임시회 중 정년연장
도 봉 구	방법원	14	53세	
노 원 구	지도원	66	57세	
은 평 구	지도원	54	54세	
서대문구	지도원	83	55세	
마 포 구	지도원	104	56세	
양 천 구	방법원	38	53세	
강 서 구	지도원	37	53세→55세	조례개정 완료
구 로 구	지도원	72	55세	
금 천 구	지도원	61	52세	
영등포구	지도원	78	52세→57세	2002년 임시회 중 정년연장
동 작 구	지도원	98	56세	
관 악 구	지도원	59	55세	
서 초 구	지도원	130	54세	
강 남 구	지도원	87	52세	
송 파 구	지도원	43	50세→55세	2002년 임시회 중 정년연장
강 동 구	지도원	69	55세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 동 규 위원,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총무과장 김 주 회)

문) 9개 구가 정년연장을 55세로 해주었거나 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검토보고를 볼 때, 정년을 55세가 한 구(區)가 가장 많은데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답) 지방지도원에 관한 것은 모든 구가 서로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모든 구가 개정을 통해서 57세로 연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지방지도원 담당업무 현황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늘 민원도 많고 동에서 애로도 많은데 지방지도원을 이쪽으로 더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중수도 관련업무 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되어 관련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중수도 관련업무, 저수조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개정근거

- 수도법중개정법률(2001. 3. 28 공포, 법률 제6449호)
-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2001. 9. 28, 대통령령 제17831호)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상수도사업본부 급수58442-898, 2001. 9. 1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2001.3.28 수도법이 개정되어 중수도 관련업무 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 신설됨에 따라
- 신설된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국)를 지정하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6조(생활복지국) 제2항 중 제33호 신설
33. 중수도 관리, 저수조 위생지도·감독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다.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급하던 중수도 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및 청소업의 신고업무 등 사무가 2001.3.28 수도법 개정으로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동년 9.29부터 시행토록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복지국에 변경 신설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선 국 단위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과 분장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4조의3 제2항제3호의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과 제11조제1항의 중수도 설치 결과 관리, 제21조의 급수장치(저수조)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제21조의2의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등 업무로서 수돗물의 위생관리·지도·감독이 주 내용이므로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로 분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참고자료

- 용어의 정의
 - 중 수 도 : 사용한 수돗물을 음용수 정도의 청정도를 요하지 않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재수시설, 이용시설 등을 말함
 - 절수설비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로 그 종류로는 소변기, 헤어헤드, 수도꼭지를 말함
 - 급수장치 :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함
(※법 제21조에 의한 급수장치는 저수조를 지칭)
- 수도법 주요 개정조문(2001.9.29 시행)
제4조의3(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 ① -----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물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1.~2. (생략)

3.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 -----하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② (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제정이유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용자·보조하고 시설주에 대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촉진기금 조성(안 제4조)
- 시설촉진기금의 용도(안 제5조)
-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관리·운영(안 제6조)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안 제7조, 제8조)

다. 제정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제정 이유

- 종로구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기금 설치 사유 및 기금 조성 재원 (안 제3조, 제4조)
- 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5조)
- 기금의 관리·운영 (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중요 기능 (안 제7조, 제8조)
- 이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14조)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면서 그 기금으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용자·보조하는 외에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본 안건은 2001년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 요구와 함께 「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음

라. 참고사항(관련법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⑩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문) 이행강제금 징수액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년에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2005년까지는 민간시설에까지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연도별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부분별로 이행강제금이 약간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부터는 전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폭우·폭설 등 기상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상의 피해 발생시 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형업체의 부도 등으로 관할 구역간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호 자치구간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규정 신설

다.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제2조, 제4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폭우·폭설 등 기상 변화와 명절 연휴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쓰레기 적체사태 발생시 이의 효율적 처리 방안으로
- 자치구 상호간 또는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상호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7조의2 신설
 -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사항 규정
- 조례 제9조제2항에 제8호 신설(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계약사항에 추가)
 -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검토의견

- 최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도심에의 쓰레기 장기적체 사태에 대비하고자 자치구 상호간 또는 자치구와 민간대행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쓰레기 처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치구의 관련조례에 반영 법제화하는 것은
- 폭우·폭설 등의 자연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이나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언제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쓰레기 장기적체 사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시로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 사료되며
-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쓰레기 처리상의 문제 발생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의 하나로 민·관이 상호 협력 및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자치구조례로 정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비 및 인력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보전(補填)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시의 관계과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참고사항(관련법 주요 내용)

- 폐기물관리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3. 생략

제45조(응급조치의 지원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 동 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만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비 및 인력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보전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시의 관계 과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작년도 폭우 때 종로3·4·5·6가 및 창신동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도 환경부에서 4,700만원 예산 지원이 있어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 빌려 썼던 장비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 등에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재해 시에는 재해기금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시·군·구 종합행정망 무인민원발급기 도입계획(구청장방침 : 기예 12410-1152호, 2001.12.5)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1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신설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수료 납부
-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시

다. 개정근거

- 시·군·구 종합행정망 무인민원발급기 도입계획(구청장방침 : 기예 12410-1152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2001년 2월 14일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서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 처리민원에 대한 수입증지 처리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신 설 >

- 전자수입증지 영수제 도입(무인민원발급기 민원)

< 개 정 >

- 현행 조례 제4조, 제5조의 용어 중 “계기” → “계기 및 무인발급기”

다. 개정 경과

- 1988년 5월 1일 : 제정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28조 근거]
- 1994년 6월 25일 : 1차 개정 [인증기 도입 규정]
- 1999년 7월 30일 / 1999년 11월 17일 : 2, 3차 개정
[동·보건소에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설치 등]
- 2001년 4월 6일 : 4차 개정 [구청장 재량권 축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현금납부 가능 → 수수료 등 변경이 있는 사항은 현금납부 가능)
- 2002년 2월 : 5차 개정 [무인발급기 도입]

라. 심사참고자료

< 종로구 수입증지 현황 >

- 수입증지 발행 액면가별 : 14종

1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350원, 500원, 550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년 도	
		2000년도	2001년도
총 수입		1,393,576	1,712,079
수입증지	소 계	325,483	518,624
	10,000원	200,800	324,380
	5,000원	57,750	89,550
	1,000원	54,550	47,292
	750원	225	0
	600원	720	300
	550원	55	220
	500원	4,350	9,500
	350원	735	0
	300원	3,390	16,080
	200원	1,680	14,810
	100원	970	7,677
	60원	0	79
	50원	250	8,730
	10원	8	6
인증기	소 계	1,068,093	1,193,455
	점유율	76.6%	69.7%

※수입증가요인 : 입찰참가 수수료 인상(2001.5.11) 1,000원→5,000원

인증기 설치장소별

계	민원봉사과	기하철 현장민원실	여권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동사무소
32	5	2 (종로3가역, 동대문역)	1	2	1	1	20

<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을 규정한 근거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종류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에 의거 무인발급기 처리대상 민원으로 행자부가 고시한 내용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2-2호(2002.2.1)

-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서 류 명	본인확인 필요여부	비 고
① 주민등록등·초본	확 인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 토지대장등본		
⑤ 건설기계등록원부	확 인	
⑥ 자동차등록원부	확 인	
⑦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⑧ 의료급여 증명		
⑨ 농지원부	확 인	
⑩ 병적증명서	확 인	

- 본인확인방법

주민등록증을 넣은 후 우무인을 지문창에 눌러준다.

(유의사항)

○ 손에 땀이 있으면 인식 오류 가능

○ 주민등록증 훼손 시도 오류 가능

- 실시 시기 : 2002년 2월 1일부터

마. 우리 구의 실시계획

< 실시시기 > 2002년 3월 중

< 처리대상 민원 > 12종

번호	서 류 명	본인확인 필요	수수료
1	토지대장 등본		500원
2	임야대장 등본		500원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00원
4	자동차등록 원부(갑)	확 인	300원
5	자동차등록 원부(을)	확 인	300원
6	건설기계등록(갑)	확 인	500원
7	건설기계등록(을)	확 인	500원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 료
9	농지원부	확 인	1,000원
10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무 료
11	주민등록 초본	확 인	150원
12	주민등록 등본	확 인	150원

< 처리장소 >(3개소)

- 구청사 내, 구민회관 내, 정부종합청사 내(시비)

< 처리에 따른 준비사항 >

- 기기 구입 완료 시험가동 중
- 관련민원 전산화 입력 완료

바. 검토의견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대상민원도 현재는 12종이지만 향후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병적증명, 납세관련 증명 등 14개 종목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 계획으로 있어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오 금 남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등 연 호)

문)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무인민원발급증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답) 2002년 3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 무인민원발급증명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14종으로의 확대실시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 14종으로의 확대실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特別市鑛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언 호)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개정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다. 개정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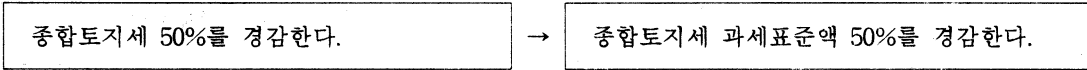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세정13415-1302(2001.12.12) - 2002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 시달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골자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나.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세의 공평성을 기한다는 자구 추가
제7조(지정문화재의 감면)	제7조제2항 신설 [제8조제2항 이기] 종합토지세 50% 감면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 감면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8조제2항 삭제

다.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은 과세표준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산세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종합토지세인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합산제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합산재산이 있을 경우는 누진을 적용으로 세액 산출에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세 50% 경감규정을 과세표준액 50% 경감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며, 임대주택 감면조항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본 규정을 지정문화재 감면규정인 제7조로 이전코자 하는 안임

라. 심사자료분석

<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②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세 율 ----- 지방세법 제234조의16

①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times \frac{2}{1000}$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 $\times \frac{3}{1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times \frac{5}{1000}$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7}{1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10}{1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15}{100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20}{100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30}{1000}$
50억원 초과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times \frac{50}{1000}$

< 우리 구 감면대상 재산 현황 > - 14건

2001년도 종합토지세·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천원)

연번	건축물	소재지	2001 부과현황			비고
			계	종합토지세	재산세	
계			54,130	50,252	3,878	
1	천주교 가회동교회	가회동 30-3				종교시설(비과세)
2	인촌 김성수 고택	계동 132-1				기념관(비과세)
3	단성사	묘동 56	22,269	22,269		철거
4	문화관광부	세종로 82-1				공공시설(비과세)
5	불교중앙회관(조계사내)	수송동 44				종교시설(비과세)
6	대한교육연합회회관	신문로1가 25	27,425	24,145	3,280	
7	새문안교회	신문로1가 42				종교시설(비과세)
8	공간사옥	원서동 219	3,324	2,760	564	
9	기독교청소년회관(YMCA)	종로2가 9				비영리사업자(비과세)
10	청일여관	청진동 20	1,112	1,078	34	
11	서울적십자병원	평동 164				사회단체(감면)
12	대한매일신보 사옥	행촌동 1-88,89				국가소유(비과세)
13	혜화동 성당	혜화동 58-2				종교시설(비과세)
14	정독도서관	화동 2				교육시설(비과세)

< 조례 개정시 경감규모 비교 >

대 상 토 지	2001년도 종합토지세(감액전)	경 감 액		
		세 50%	과표 50%	차 액
모동 56 (단성사)	22,269,480	11,134,740	12,668,440	1,533,700
신문로1가 25 (대한교육연합회관)	24,145,600	12,072,800	14,112,740	2,039,940
원서동 219 (공간사옥)	2,760,210	1,380,100	1,687,140	307,040
청진동 20 (청일여관)	1,078,140	539,070	673,930	134,860
계(4건)				4,015,530

마.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2001년 12월 12일자 세정 13415-1302호

바. 검토의견

금번 개정(안)은 제1조 목적규정에 자구를 보완하고 감면규정의 불합리를 개정하며, 감면규정의 조문을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시키는 보완적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유찬중 위원, 현수한 위원, 이형술 위원, 오금남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문) 공간사옥과 청일여관은 어느 문화재 부속토지이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답) 공간사옥과 청일여관은 어느 문화재 부속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향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이며, 시에서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되며 활용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 보고토록 하여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문화재)하는 것입니다.

문) 우리 구의 감면대상 14건을 살펴보면 종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치 있는 곳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8.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안이유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조서
1)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당초	변경	
창신제6구역	종로구 창신동 400-4번지 일대	16,464.7	6,060.3	감:10,404.4m ²

2) 부분별 사업계획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6,060.3	100	
		일반상업지역	6,060.3	100	
도시계획 용도지구		계	6,060.3	100	
		중심지미관지구	6,060.3	100	
택지 및 공공시설	택지	계	6,060.3	100	
		택 지	4,062.0	67.03	
	공공시설	도 로	1,577.44	26.03	
		녹 지	420.86	6.94	

(나)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 용 형 태	연 장 (m)	위 치		비 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 로	3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	창신동 400-4	창신동 400-3	도시계획선상 도로(미개설)
폐지	소 로	3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	창신동 400-4	창신동 400-3	“
기정	소 로	3	2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2	창신동 400-3	창신동 240-14	현황도로
변경	소 로	3	2	5~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2	창신동 400-3	창신동 240-14	현황도로확폭
신설	소 로	3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	창신동 240-8	창신동 240-17	

(2) 면적시설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 칭	세 분 류			
신 설	녹 지	경관녹지	창신동 400-4번지 창신동 398-1번지	420.86	

(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 정비.개량 계획

지구구분	면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창신제6구역	6,060.3	창신동 400-4일대	아파트 8개동 406호				아파트 8개동 406호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창신제 6구역	6,060.3	택지	4,062.0	종로구 창신동 400-4번지 일대	주거 + 판매 + 오피스텔	54.90	699.04	82.10 20층 옥탑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이하 임대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45㎡ 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0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00%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라)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가구 계획		획지 계획		지구 또는 부지의 주된용도	비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신설	창신 제6구역	종로구 창신동 400-4번지 일대	6,060.3			택지	4,062.0	주거 + 판매 + 오피스텔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4. 意見 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9.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안이유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조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m ²)		비 고
		당초	변경	
승인제3구역	종로구 승인동 206, 1429번지 일대	24,087	19,276.7	감 : 4,810.3m ²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4. 意見採擇：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없 음

10. 都市計劃(案) 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2. 2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관내 평창동 148-16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동차정류장	종로구 평창동 148-16일대	7,736	감)6,949	787	'79. 6.26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 역		위 치	면적(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지역)	종로구 평창동 148-16일대	6,069	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로구 평창동 148-9 일대	880	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자연경관지구)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답변자 :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문) 평창동 148-16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주변의 고도 18m 이하(5층 이하)의 제한을 받는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답)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이라고 하여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구분을 12층 이하와 7층 이하의 2종류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며 고도제한은 따로 받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4. 意見 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